

# 러시아 11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기술규정) 특수식품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T P T C 027/2012) 미적용 항목

- 출처: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166(2018.10.16)

- 특수식품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시 적합성 평가서를 제출해야함
  - 세관신고서 작성 시 치료 및 질병예방 식품을 포함하는 특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T P T C 027/2012) 요건준수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 기술규정 요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는 4가지 종류가 있음
    -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따라 발행된 적합성 평가서(확인서)
    - 단일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단일 양식으로 발행된 관세동맹의 적합성 선언서 혹은 적합성 증명서
    - 통관 절차에 따라 제품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률에 맞게 발행된 적합성 선언서 혹은 적합성 증명서
    - 통관 절차에 따라 제품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률에 맞게 발행된 기타 서류
-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는 해당 기술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목록과 함께 적용 제외 대상을 지정함
  - 다음 제품은 본 기술규정 요건의 준수 대상에서 제외됨
  - 적합성 평가서 정부 등록증 또는 정부 단일목록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적합성 선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품	관련 HS코드
<b>I. 운동 영양공급용 특수 식품</b>	
1. 단백질 믹스, 우유 단백질, 탄수화물 믹스, 아미노산, 비타민-미네랄	0404, 1702, 2106, 2202, 2922 41 000 0, 2922 42 000 0, 2922 43 000 0, 2922 49, 2940 00 000 0, 3502 20 910 0, 3502 20 990 0, 3504 00 100 0
<b>II. 임산부 및 수유부용 특수 식품</b>	
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401

3.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함)	0402
4. 버터밀크, 응고유 및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우유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및 과일 및 견과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함)	0403
5.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혹은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우유의 조성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0404
6. 치즈와 커드(Tvorog)	0406
7. 분리대두단백으로 만든 제품, 단백질	2106, 3504 00
8. 우유와 곡물로 만든 포리지(즉석조리)	1901
9. 과일 및 야채 제품(과일, 야채 주스, 음료, 과즙, 모르스)	2002 09, 2009, 2202
10. 인스턴트 잎 차, 마테차, 파라과이 차	0813, 0903 00 000 0, 0909, 1211, 2106 90 920 0
<b>Ⅲ. 유아식을 포함한 치료용 및 질병예방용 식품</b>	
11. 저유당 및 무유당 제품(소젖 혹은 기타 동물의 젖, 및 또는 유사한 제품과 비교하여 유당을 덜 함유하고 있는 우유가공제품으로 만든 제품)	0401, 0402, 0403, 0404, 0406, 1901 90
12. 분리대두단백으로 만든 제품	3504 00
13. 완전 또는 부분 단백질 가수 분해물로 만든 제품	2106
14. 저단백제품(전분, 시리얼, 파스타 및 기타제품)	1103, 1108, 1901, 1902, 1905, 2106
15. 밀가루 과자류	1905
16. 당뇨환자용 식품(소화가 빠른 탄수화물 (단당류-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와 이당류-수크로오스, 락토오스)이 포함되지 않거나 유사한 제품 비교하여 그 함량이 낮은 제품과 또는 탄수화물 조성이 변형된 것)	1806, 1901, 1904, 1905, 2106
17. 기타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2
18.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2105 00
19.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및 기타 무알코올 음료	2202
20. 멸균된 유제품 믹스, 무균충전공법으로 만든 멸균 우유 및 크림, 커드	0401, 0402, 0403, 0404, 0406 10, 1901
21. 페닐알라닌이 없거나 함량이 낮은 제품(단백질 가수 분해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과 또는 페닐알라닌이 없는 아미노산 혼합물과 또는 페닐알라닌 함량이 낮은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1901, 2106
22. 고단백 분유; 우유로 만든 동결건조 제품	1901, 2106
23. 조산 및 또는 저체중 영아 식이를 위한 믹스(소젖 또는 기타 동물의 젖 또는 우유가공제품으로 만든 식품)	1901, 2106
24. 저온살균 소시지	1601 00
25. 2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육류 동결건조 제품	1602, 2104
26. 2세 이상의 유아를 위한 육류 동결건조 제품	1602, 2104
27. 소매 포장 유아식	1602 10 001 0, 1901 10 000 0, 2005 10 001 0, 2007 10, 2104 20 001 0
28. 콩 음료; 너트, 시리얼, 씨앗 음료	2202 99 110 0, 2202 99 150 0

- 다음 식품에 대해서는 특수식품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TP TC 027/2012)이 적용되지 않음
  - 유아용 치료식과 질병 예방식을 제외한 유아용 식품
  - 요식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일반음식점, 케이터링 서비스)
  - 천연 미네랄워터(식탁용 광천수, 식탁용 약수 및 천연 약수 포함)
  - 생물학적 활성 식품보충제(건강보조식품)
- 본 결정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함
  - 2018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

## 2. (수출현안) 2018년 12월 원당(raw sugar) 수입 관세율 설정

- 출처: 러시아 재무부 공문 N05-57/70763 (2018.11.12.), RBK 뉴스(<https://rbc.ru>), 러시아 설탕협회(<https://sugar.ru>), TASS 뉴스 (<https://tass.ru>), Agroinvestor 뉴스 (<https://www.agroinvestor.ru>)
- 러시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원당 수입관세율을 \$240로 설정함
  - HS코드 1701 13 103 2, 1701 13 903 2, 1701 14 103 2, 1701 14 903 2에 해당하는 사탕수수 원당 제품과 1701 91 003 2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 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설정함
  - 러시아는 뉴욕 국제선물거래소(ICE)의 11월 설탕 평균 거래 가격(\$290.67)을 고려하여 1000kg당 240 미화 달러의 수입관세율을 설정함
  - 러시아의 원당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항목별로 \$140-250으로 책정됨
  - 올 5월과 8월의 뉴욕 국제선물거래소(ICE)의 평균 원당 거래가격은 1톤당 각 \$260.78, \$230.58 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6월과 9월 수입관세율은 1000kg당 \$250 미화 달러로 책정되었음
- 러시아 설탕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설탕 도매가격이 상승함
  -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탕무 재배면적이 작년대비 6% 감소하여 설탕 수확량 또한 1/4로 감소하면서 설탕 도매가격은 올해 초 이후 43.9% 증가하여 35.9 루블/kg에 이름
  - 반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8년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설탕가격지수는 157.3p로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함
  - 또한 세계 설탕 선물가격은 2017년 2분기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11월 말에는 12.87 센트/파운드에 기록함
  - 90년대 러시아 설탕 공급의 해외의존도는 약 70% 가량이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해 낙후된 생산설비를 현대화 하면서 자급할 수

있게 됨

- 2004년부터 효율적인 수입관세율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관세율을 월별로 조절하면서 세계 설탕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해옴
- 원당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통해 수입 증가와 러시아내 설탕 도매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임
  - 설탕의 도매가격 상승은 제과·제빵, 과자류 생산업자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캐러멜과 막대사탕 등 저가 제과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설탕 소매가격은 전년 10월과 비교하여 5%만 상승함
  - 러시아 최대 유통체인업체 X5 Retail Group (Perekrestok, Pyaterochka, Karusel)에 따르면 9월 초부터 설탕의 소매가격이 인상했으나 소매업체 자체의 정책에 따라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농업부 장관 드미트리 파트루셰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설탕 도매가격 상승이 소매가격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설탕 가격 변동에 따르는 변화에 따른 수출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러시아는 이미 원당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확량 변화에 따라 수입량이 증감하는 상황이므로 설탕 대체제의 수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러시아내 사탕, 과자류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음

##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HS코드 해설서 내용 일부 변경

- 출처: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협의회 권고 N23 (2018.10.30), (사이트 공개일 : 2018. 11. 06)
- HS코드 1211에 대한 해설서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함
  - 1211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로 정의됨
- 해당 코드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 중 다음을 변경함

수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의 향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음료 생산용 추출물 제조에 사용되는 다음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 호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또는 그 부분의 혼합물(2106)</li> <li>(b)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그 부분과 다른 그룹(07류, 09류, 11류)에 속하는 식물성 제품의 혼합물(09류 혹은 2106)</li> </ul> </li> </ul>
수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소스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이 호의 다양한 종류의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 구성된 혼합물(2103)</li> <li>(b) 음료의 향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음료 생산용 추출물 제조에 사용되는 다음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이 호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 구성된 혼합물(2106)</li> <li>(ii)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그 부분과 다른 그룹(07류, 09류, 11류)에 속하는 식물성 제품의 혼합물 (09류 혹은 2106)</li> </ul> </li> </ul> </li> </ul>

- 또한 2103(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의 주석에 ‘이 분류에 HS코드 1211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소스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해당하는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포함한다.’ 는 문구를 추가함
- HS코드 해설 변경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 1211의 수입관세율은 5%이고, 2103은 수입관세율은 세부항목별로 8-15%로 규정되어 있음
  - 본 권고안에 따라 기존 1211에 분리되었던 소스의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이 2103으로 규정되면 수입관세율이 상승할 수 있음

## 2. 생선 기름과 젤리형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HS코드 지정

- 출처: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N162 (2018.10.16.), N171 (2018.10.30.)
- 생선기름에 대한 HS코드를 규정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관세법 제22조 1항 2호에 의해 생선 지방에 대한 HS코드 분류를 정함
  - 어류에서 얻어진 생선지방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인간 영양 균형을 위해 비타민을 첨가하고 젤라틴 캡슐로 포장된 것으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은 1504에 분류됨
  - 해당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세부코드는 생선의 종류와 추출 부위, 비타민 함유 등에 따라 나뉨
  - 1504의 수입관세율은 15%이며 부가가치세는 18%임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되어 2018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

- 젤리형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HS코드를 설정함
  - 젤리형태의 건강보조식품 (설탕과 (혹은) 당시럽을 첨가한 것, 씹어 먹는 형태로 된 것,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한 것,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인간 영양 균형을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한 것)을 2106로 분류함
  - 2106의 수입관세율은 첨가된 당의 형태와 첨가물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5%, 8%, 10%, 12%로 구분됨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되어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됨

### III 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없음

※ 첨부파일 참조